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년 6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16(월) 평창군수(환경복지과장)
- 나. 회부일자 : 2003년 6. 20(금)
- 다. 상정일자 :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 6. 20)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가.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부변지역에 연간 폐기물반입량에 대한 폐기물반입수수료 환산금액의 10%를 추가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규정.
-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
- 주민지원기금을 평창군 출연금외의 폐기물 반입량을 폐기물반입량을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환산한 금액의 10%추가 지원한다.
-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용한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우리군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축진및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 주변영향지역은 군수가 결정·고시하고 주민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해당 지역의 군의원, 군의회에서 설정한 군민대표10명,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와 동년 3월 18일 14:00 미탄면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헌법·법률·조례등은 법령으로서 공문서입니다. 법문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하고 법문을 표현할 때 일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법문에 위배되는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의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수정안
<p>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p> <p>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u>군의원</u>으로 <u>의회</u>에서 <u>선정한 의원 1명</u>.</p> <p>4. <u>평창군수가</u> 선정한 공무원 2명.</p>	<p>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p> <p>1. 폐기물처리시설 <u>해당지역</u> <u>군의원</u>.</p> <p>4. <u>군수가</u> 선정한 공무원 2명. *3조부터(이하 “군수”라 한다)적용해야 함.</p>
<p>제5조(주민지원기금조성)</p> <p>2. -----환산한 금액에 <u>10/100</u>을 곱한 금액.</p>	<p>제5조(주민지원기금조성)</p> <p>2. -----환산한 금액에 <u>100분의 10</u>을 곱한 금액. * 백분율(%)표기 원칙임.</p>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 대화쓰레기매립장의 연간 수수료는?	○년간 7천만원 정도.

5. 토론요지 : 법문형식에 위배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구성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넓게 수용하려면 해당지역의 주민 대표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1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6월 20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법문형식에 위배되는 내용을 수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넓게 수용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주민대표 수를 조정하기 위함.

2. 수정주요골자

- 안 제4조제1항제1호중 “소재지의 군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을 “해당지역 군의원”으로 수정.
- 안 제4조제1항제1호중 “주민대표 10명”을 “주민대표 11명”으로 수정.
- 안 제4조제1항제4호중 “평창군수”를 “군수”로, “공무원 2명”을 “공무원 1명”으로 수정.
- 안 제5조제1항제2호중 “10/100”을 “100분의 10”으로 수정.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1호중 “소재지의 군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을
“해당지역 군의원”으로 하고

안 동조동항 제2호중 “주민대표 10명”을 “주민대표 11명”으로 하며

안 동조동항 제4호중 “평창군수”를 “군수”로 “공무원 2명”을 “공무원 1명”
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2호중 “10/10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정안	수정안
<p>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생략)</p> <p>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u>군의회</u>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p> <p>2. ----- -----<u>주민대표 10명.</u></p> <p>3. (생략)</p> <p>4. <u>평창군수</u>가 선정한 공무원 2명.</p>	<p>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p> <p>1. 폐기물처리시설 <u>해당지역</u> 군의원.</p> <p>2. ----- -----<u>주민대표 11명.</u></p> <p>3. (개정안과 같음)</p> <p>4. <u>군수</u>가 선정한 공무원 1명.</p>
<p>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 (생략) ② (생략)</p> <p>1. (생략)</p> <p>2. ----- -----<u>10/100</u>-----.</p>	<p>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100분의 10</u>-----.</p>